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입니다.

조시현교수님께 전해주세요.

총 1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8/11/01 14:15 FAX

北朝鮮 延平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 위원회

Committee on Measures for Compensation to
the Former "Comfort Women for Japanese
Army" and Pacific War Victims (COCOPA)

Ryonhwa-1,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 of Korea

Tel: 850-2-18222 (Ext: 8048) Fax: 850-2-381464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앞

11월 21일부 귀 단체의 확스를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헤그최종판결준비로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판결에서의 공동기소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 11월 8일부 확스에서 이야기한대로 우리는 공동기소장에서 일본군성노예제의 사회력사적배경과 일본정부의 국가책임부분을 별지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이미 지난해 12월에 도쿄법정시에 북남공동기소와 관련하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헤그판결에서도 공동기소로 공동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는 조건에서 이번에는 공동기자회견을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헤그에서 상봉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주체90 (2001) 년 11월 28일

평 양

28/11/01 14:15 FAX

04

북남공동기소내용

(그리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 등 전범자들의 대한
기소 및 일본의 추가책임에 대한 법적유)

1. 개인의 형사책임

북한검사단은 일본군성노예제를 재판하는 2000년 《녀성특별재판법법정》 원장 제11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일본 《천황》 히로히토와 도조 히데끼, 미나미 지로, 이다가끼 세이시로, 오카구라 야스지, 우메즈 요시지로, 안도 리끼찌, 마쓰야마 유조를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로 기소한다.

배 경

구일본정부와 군부가 조선강점기간에 조선녀성을 기본으로 하여 벌린 일본군 《위안부》행위는 일정한 사회력사적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감행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성노예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력강점

조선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적위치를 하여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해 눈독을 들여 온 일본은 1868년 《明治유신》 이후 무력으로 조선에 계속시릴것을 주장하는 《정한론》에 기초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적인 팽창주의정책을 실시하며 왔다.

일본은 1875년 《은알호》 사건을 조작하고 일본에만 복해를 주는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다.

1894년-1895년의 청일전쟁이후 일본은 청나라에 시모노세키조약 (1895년)을 강요하여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배적인 지위를 인정케 하였다.

또한 일본은 1902년 1월 30일 영국과의 동맹협약과 1905년 미국과의 가쓰라-타프트비밀협정들을 통하여 조선에서의 그들의 이러한 지위를 담보 받았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기화로 조선에 10만의 정규부력을 들이 밀어 조선에 무력으로 완전히 강점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저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1905년에 《물사 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내정권까지도 완전히 빼앗았으며 1만명도 안되는 조선군대마저 해산해 버렸다.

이렇게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 무력을 완전히 장악한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강요하고 조선강점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후 전력불분립 군부독재를 조선통치의 기본방식으로 규정하고 《친왕》의 칙령에 따라 일본 육해군 대장들을 조선총독으로 파견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절대군주와도 같은 총독을 최고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권력지배체제를 세워놓고 조선인민에 대한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수만명의 일본군을 고착배치하고 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수만명의 경찰뿐 아니라 방대한 헌병부력까지 내몰았다.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조선민족자해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동화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었다. 일제는 《동조동군》에 대해 떠돌면서 《내선일체》의 미명하에 《창씨개명》, 《공성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제는 또한 《국어》라는 제목으로 일본말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저세말살하기 위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 역사를 의곡지출하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와 유적, 유물들을 다구 파괴하고 약탈해 갔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령》(1938년)의 미명하에 저들의 이익과 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의 수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일제는 800여만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을 저들의 노동력으로, 군인, 군속으로 강제로 끌어 갔다. 일제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강제로동파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으며 지어는 일본군의 총알탄이로 생육을까지도 당하였다.

또한 헤아릴수 없이 많은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 부끄러운 인민들이 비법적인 감금과 고문,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지어는 족절처형을 언도 받거나 닥치는대로 살해당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착취와 학살

조선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학살에서 기본은 농촌경제에 대한 수탈이었다.

그것은 일제의 강점 당시 학후한 봉건국가였던 조선에서 농촌경제가 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일제는 《토지조사령》, 《산미증식계획》, 《광무품출제》의 미명하에 수많은 조선농민들에게서 토지소유권을 빼앗고 그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으며 그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증일전쟁이 장기화되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조선의 농민들 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학살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로동자들에게 일본인로동자들의 1/2-1/3밖에 안되는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보잘것없는 수입마저 절반이상을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강탈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에 접어들면서 《공출제》를 더욱 강화하여 조선의 현찰을 비롯한 농토산물과 철, 석탄, 목재, 수산자원 등을 마구 학살해 갔다. 일제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전쟁에 이용할수 있는것이라면 인민들의 기초품이나 생활도구마저 모조리 굶어 갔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자 1942년부터 매년 300만톤의 송란유를 생산, 학살해감으로써 조선의 산과 들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민은 온갖 정치적무권리속에서 그야말로 상가집 개만도 못한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였다.

일제의 착취와 학살로 말미암아 조선인민이 극도의 경제적빈궁에 직면하고 여성의 사회적지위가 낮았던 당시의 환경속에서 일제는 제 마름대로 사기와 폭력의 방법으로 근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면행해갈수 있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위안부》면행은 오직 조선에 대한 정치적 및 군사적지배와 정보통치하에서만 가능한것이였다.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 《위안소》를 위한 안전한 공급대상으로 삼았다.

일제의 발길이 닿는 모든 지역물에는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특히 조선녀성들은 최전방에까지 끌려 다녀야 했다. 이것은 그들이 생명이 위협당하는 장소들에서까지도 성폭행을 당했다는것을 보여준다.

2. 국가책임

일본국가에 대한 법적응

I 사실진술

국제법상 국가는 국가기관들의 비법적인 국제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일본의 국가적책임은 《천황》, 총리대신, 내각의 기타 대신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관리들과 경찰관들, 육군대장들을 비롯한 일본제국군대의 장교들과 군인, 군속들이 일본군성노예제의 수립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로부터 산생된다.

대우기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관리하는 사업에 가담한 민간인들의 행동도 사실상 국가를 대표하여 한것이므로 역시 일본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일본정부와 군부는 이 모든 행위들을 총괄적으로 장악통제하였다.

당시에 존재한 국제법을 놓고 보아도 이러한 행위와 묵인은 국제적의무를 위반한것이므로 일본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를 수립하고 유지해 온 사실을 계속 부정하여 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계속 되고 그와 관련한 사실자료들이 계속 발굴, 공개되어서는 회피할수 없게 되자 1993년 8월 4일야마모토 제2차 세계대전시기 《위안소》로 불리운 강간수용소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직접 《관여》하였으며 《위안부》들이 강제로 모집되었다는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러저러한 기회에 저들의 군성노예제범죄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과》는 법적책임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었다.

일본정부는 오늘날까지도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인하고있다.

II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일본의 책임에 대한 법적근거

일본군성노예제가 수립되고 유지되던 시기에 이미 관례적이고 관습적인 국제법률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세계대전이후에 발전된 국제법을 소급적용할수 없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논리적 일치의 가치도 없는것이다.

- 일본군성노예제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위반이다.

일본이 1911년에 비준한 1907년 헤그제4협약과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규정들은 일본정부와 군부가 조선인 《위안부》들에게 저지른 범죄행위에 적용된다.

국제육전관습법은 강간, 노예, 잔혹한 살해, 살인, 대중학살, 고의적인 고문주거, 손해, 불법적인 감금, 유괴, 국외추방, 개별적사람들의 존엄 무시, 민간인들에 대한 비인간적이며 야만적인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쟁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여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고 있다.

- 일본군성노예제는 노예제 및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법위반이다.

일본은 조선녀성들을 군성노예로 강제편행하고 그들에게 온갖 고문과 피해를 준것으로 하여 노예제철폐와 노예무역금지를 규정한 당시의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인권규범의 하나로 정화된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금지는 일본군성노예제가 실시되던 당시에 이미 국제관습법과 강행법규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노예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전에 벌써 전이나 명확시거나 관례없이 국제범죄로 인정되고 있었다.

일본은 일찌기 1872년 한 노예상인을 처벌한 예가 있으며 유괴, 주선행위를 범죄시하는 등 노예제와 관련한 국내립법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하였다. 따라서 일본이 1926년 노예제협약의 가입국은 아니지만 노예제금지와 관련한 국제관습법에 구속되는것은 명백하며 그와 반대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피해자들이 협정에 제출한 증언들과 증거물을 놓고 볼 때 일본은 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기관, 유괴의 방법으로 조선녀성들을 강제편행하여 《위안부》로 만들었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생존권을 포함한 그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여 인간이 아니라 물건과처럼 취급한 노예상태에 빠뜨렸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전례없는 성노예제도를 내오고 유지함으로써 노예제금지와 관련한 국제법규범을 완전히 위반하였다. 더욱이 일본정부와 군부가 수많은 조선여성들을 강제편행하여 전쟁마당에 설치된 《위안소》 불에 직접 수송한것은 일본복가가 노예우역을 한것으로 되며 이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것으로 된다.

- 일본군성노예제는 부녀 및 아동매매금지에 관한 국제법위반이다.

일본은 부녀 및 아동매매와 관련한 다음의 국제협약들을 위반하고있다.

- (1) 1904년 3월 18일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정
- (2) 1910년 5월 4일 백인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 (3) 부녀 및 아동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일본은 1925년 10월 21일에 이 조약들을 인정하였다. 미성년 여성들을 강제적수단으로 유혹, 주선, 유괴하여 성착취를 하는것을 1930년대에 이미 확립된 국제관습법상 금지되어 있었다.

일본은 일본군《위안소》에 필요한 조선인여성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판매적이고 관습적인 국제법의 원칙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에 매달렸다.

- 일본군성노예제는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법위반이다.

일본군성노예제법위는 일본정부가 1932년 11월 21일에 서명하고 비준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조에 대한 위반이다.

협약 제2조에는 《위협공갈의 방법으로 강요되었거나 자의성이 부여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봉사》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협약 제1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본의 성노예제는 강제노동이라고밖에 달리 해석될수 없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대책을 세울데 대한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일본군성노예제는 국제형사법 위반이다.

기소된 점인들과 관련하여 일본은 인도에 대한 죄를 금지함에 대한 국제형사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는 《아래의 행위가 감행된 나라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전쟁전 또는 전쟁기간에 감행된 살인, 고살, 노예화, 추방을 비롯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이나 정치적 및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행위》를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비인간적인 행위들은 갈간죄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국제관습법의 한 부분으로 성립되었다.

일본정부에는 개인들이 인도에 대한 죄를 감행하도록 체계적으로 명령, 지시, 조장한 책임이 있으며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기소처벌할 국제법상의무를 지니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성노예제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일본은 조선여성들에게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기본인권을 유린하였다.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오늘날에도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근본원칙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판결과 관련한 요구

첫. 일본정부는 구일본외 계승정권으로서 구일본제국과 군부가 실시한 성노예제에 대하여 책임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적용을 수검보충하며 이와 관련한 증거, 종언, 법적주장을 법정에 제출할 권리를 가지면서 독남검사단은 법정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것을 요구한다.

① 일본은 조선강점기간에 조선녀성들을 강제적으로 전쟁, 이송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설치된 수많은 일본군 《위안소》 등에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고 《위안소》와 성노예제를 위한 시설들을 건설, 설치, 운영, 자금조달 보충하였으며 저들의 대리인들과 하수인들을 통하여 일본군병사들이 《위안부》들에 대한 각종 범죄를 감행하도록 지시, 고무, 후원함으로써 1907년 헤그폭전법을 비롯한 국제전쟁관습법들과 그밖의 국제인도법의 근본원칙들에 규정된 자기의 법적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범죄에는 성노예제, 학치, 비법적인 구류, 강제이송, 감금, 고문, 절단, 고의적인 고통주기, 강제불임, 사고로 인한 엄청난 죽음, 살해, 살인, 절단살육, 비인간적인 잔인한 대우, 개인의 존엄에 대한 국형과 같은 행위들이 속한다.

② 일본은 노예제폐지와 노예무역금지에 관한 국제법의 관례적인 원칙을 위반하였다.

③ 일본은 여성매매금지와 관련한 많은 국제조약들과 국제관습법들을 위반하였다.

④ 일본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지니게 되는 법적의무를 위반하였다.

⑤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로 되는 행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북남검사단은 또한 법정이 다음과 같이 선언할것을 요구한다.

① 일본은 군성노예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구명하고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송수와 나라별 피해자수, 《위안소》가 설치운영된 지역과 《위안소》 이름, 관리자이름, 《위안부》들에 대한 처리정령을 비롯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일본정부는 또한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조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육체적 및 정신적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국가적인 공식사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죄는 정부의 개별적인물이 이러저러한 기회에 한두마디 하는 발언이 아니라 국회결의나 정부의 성명과 같은 서면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③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배상과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것은 공인된 국제법적 요구이며 국제적실무실천이다. 일본은 가해국으로서 《아시아여성들을 위한 국민기금》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돈으로가 아니라 국고금으로 충분한 국가적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은 피해자들뿐만아니라 그 유가족들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일본정부는 일본에서 거듭 일어나고 있는 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야 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피해성공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기 조국으로 귀국시키며 희생자들의 유해를 송환하는것과 같은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국제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범죄를 계획, 모의, 명령, 지시, 감행하였거나 고무추동한 자들을 모두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 형제재하에서 법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일본은 성노예범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분야 등에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은 현재 국내에서 광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역사외국책품을 담장 중지하며 모든 역사서적들과 역사교과서들에 일본군성노예제행위의 실상을 사실그대로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박물관, 문서보관소 등을 설치하고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보관함으로써 역사적사실이 대대로 전래지제 하여야 한다.